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7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진성준 · 임오경 · 김남근
김주영 · 김태년 · 박홍배
정태호 · 민병덕 · 서영석
김영호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신설, 제52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신설,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

제52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2월 말일”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제59조 중 “4월 10일”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로 한다.

제60조 중 “5월 20일”을 “5월 6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20일)”로 한다.

제61조 중 “5월 31일”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

제3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1조의2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 및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7호, 제71조제8호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6. (생략) <u><신 설></u>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u>2월말까지</u>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u>5월 31일까지</u>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 ----- ----- -- <u>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u> --- ----- -----.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

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성 및 제출) ① -----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
-----.

② -----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

-----.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3월 2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제60조(결산검사) -----
-----.

-----5월 6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20일)-----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
-----.

제61조의2(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반영)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